#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원봉사 운영지침(♡-1)

-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에 따른 지원봉사 현장 방역 대응 강화 -
-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확인으로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에 따라 자원봉사현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-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(보건복지부, 2021.12.3.)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시, 대면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관리자의 방역 실천 기준 및 안전 가이드 제시
- ※ 11월 3일자 기 배포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(VI)을 일부 개정

# 1 운영지침 개정(안)

구분	운영지침(VI) (변경 전)
방역패스	(고위험시설) 5종류 (유흥시설, 노래연습 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경륜.경정. 경마.카지노 등)
적용범위	(취약시설) 의료기관(입원), 요양시설(면회), 중증장애인.치매시설, 경로당.노인복지관.문화센터등 고령.취약시설
청소년 활동	청소년 중 예방접종 미 실시자, 비대면 활동 권고
고령/취약 시설활동	예방접종(2차) 완료 확인 후, 배치
사적모임	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

운영지침(VI-1)
(변경 후)
(신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
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
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
츠경기(관람)장, <u>박물관·미술관·과</u>
<u><b>학관,</b></u> 파티룸, <u>도서관</u> , 마사지·안마
소
12세~18세 방역 패스 적용
(8주간 유예 / *2.1부터 필수)
추가예방접종자(3차, 부스터샷)에
한해 대면 활동 배치 가능
수도권 6명, 비수도권 8명

## 2 주요 내용

□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 접종에 주력하며 접종증명· 음성확인제(방역패스),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

- O (미접종자 보호 강화)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 확대
  - <u>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면 활동</u> 추진 시, 봉사자의 접종 증명과 PCR검사 음성 확인 필수

#### <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종)>

- · (기존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경정·경마:카지노
- · (신규) 식당키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스터디키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자인미소

#### <방역패스 미적용 시설(14종)>

·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, (실외) 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홍보관, 종교시설

#### O (청소년 유행 차단)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 조정

- 현행 18세 이하 → 11세 이하로 조정(12~18세도 방역 패스 적용)
- (적용시기) 청소년 예방접종 유예기간(약 8주)\* 부여 후, 2.1(화) 실 시 예정
- <u>미접종 청소년은 비대면 활동 위주로 활동 배치. 2. 1(화) 이후, 대면</u> 활동 추진 시 방역 패스 적용 필수

### □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 강화에 따른 활동

- O (요양병원 등) 미접종자의 환자(입소자) 접촉 업무 배제
- (노인여가복지시설) 경로당·노인복지관 등 추가접종자(3차 부스터샷) 만 시설 이용 가능.
- 봉사자 활동 시, 추가 접종자에 한해 대면 활동 가능. 미접종자, 2차 접종 완료자는 비대면 활동 전환

### □ 사적모임 조정 :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

※ 자원봉사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며, 봉사활동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. 단,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